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:양금희·성일종·윤창현

김예지 · 지성호 · 강민국

서병수 · 송언석 · 김기현

윤재옥 • 권명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'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,105건 중 7,224건(89.1%)이 중소기업으로 의 이전계약이며,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1,002건 중 9,474건(86.1%)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었음.

이렇듯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 근거 조문은 부재한 상황임.

법적 근거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'기술이전 촉진계획'을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한 상태임.

이에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"기술혁신"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,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,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3호).
- 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- 다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,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 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"을 "새로운 기술의 개발,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,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3의3. "기술혁신 성과물"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(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),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,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.
- 3의4. "사업화"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·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3의5. "중소기업 기술거래"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 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

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
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, 제5장(제27조의2 및 제27조의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

제27조의2(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
- 2.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・기술평가정보의 수집・분석・유통 및 제공
- 3.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- 4.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
- 5.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
- 6.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・분석
- 7.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
- 8.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
- 9.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 기반조성
- 10.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는 사업

- 11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 기금(이하 "기술보증기금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의3(계정의 설치 및 재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(이하 "계정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.
 - 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
 - 3. 관련 기업, 단체 등
 -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·지출 및 운용과 회계·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2. (생략)
- 3. "기술혁신"이란 <u>기업경영 개</u>
 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
 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
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
 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
3의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개 정 안

제2조(정의) -----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3의2. (현행과 같음)

3의3. "기술혁신 성과물"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 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(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 다),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 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, 지 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.

3의4. "사업화"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·생산 또는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

<u><신 설></u>

4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
3의5. "중소기업 기술거래"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로서 기술의 양도, 실시권 허 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 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.

4.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

제27조의2(중소기업 기술거래· 사업화 촉진 등)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 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- 1.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알선 및 중개
- 2.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·기 술평가정보의 수집·분석·유

통 및 제공

- 3.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 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 축·운영 및 관리
- 4.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
- 5.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
- 6.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·분석
- 7.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 화 촉진을 위한 지원
- 8.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 구개발 지원
- 9.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

 기반조성
- 10.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11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(이하 "기술보증기금(이하 "기술보증기금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

<신 설>

게 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의3(계정의 설치 및 재원)
 -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(이하 "계정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 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
 - 2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3. 관련 기업, 단체 등
 -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·지출 및 운용과 회계·결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	<u>한다.</u>
계5자 표치	제요자 표회
<u>제5장</u> 보칙	<u>제6장</u> 보칙